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2008. 12.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 § 목 차 §

I.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개요 .....	1
1. 계획의 수립배경 .....	1
2. 계획의 성격 .....	1
3. 추진경위 .....	1
II. 개발 여건분석 .....	2
1. 국외 여건변화 .....	2
2. 국내 여건변화 .....	2
3. 정책 패러다임 변화 .....	5
III. 어촌·어항개발 정책방향 .....	6
1. 비전과 전략 .....	6
2. 새로운 정책방향 .....	6
IV.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	7
1. 수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어항 조성 .....	7
가. 일반현황 .....	7
나. 어항개발규모 산정 .....	10
다. 어촌어항 연계개발 .....	12
라.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15
1) 어항시설의 지속적 확충(어항기본사업) .....	15
2) 국가어항의 노후시설 정비(어항정비사업) .....	19
3) 어항관광활성화를 위한 복합적 어항개발(어항환경개선사업) .....	25
마. 어항 투자 계획 .....	32

2.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기반 조성 .....	33
가. 일반현황 .....	33
나.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36
1) 어촌의 유형화 개발로 소득원 다변화(어촌개발사업) .....	36
2) 소득과 연계한 어촌관광 활성화(어촌관광개발사업) .....	47
3) 어촌 정주환경 개선(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49
4) 어촌휴먼웨어 육성(어촌개발전문인력양성사업) .....	52
다. 어촌 투자 계획 .....	59
3.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	60
가. 현황 .....	60
나.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지원 .....	61
<b>V. 경제적 효과분석 .....</b>	<b>64</b>
1. 투자계획 .....	64
2. 경제적 효과분석 .....	65

# I.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수립배경

- 어촌어항의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
-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방향 제시 필요
- 2005.12 어촌·어항법을 제정하여 발전잠재력이 높은 어촌과 어항의 연계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근거 마련

## 2. 계획의 성격

- 어촌·어항분야에 대한 종합계획
  - 어촌어항개발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어촌·어항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어촌·어항법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5년마다 수립토록 명시

## 3. 추진경위

- '06. 3 : 어촌·어항 기초자료조사 착수
- '06. 11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06. 12 : 어촌어항 기초자료조사 완료
- '07. 2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07. 7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07. 10 : 1차 공청회 개최
- '07. 12 : 2차 공청회 개최
- '08. 3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 II. 개발여건분석

### 1. 국외 여건변화

- 국제동향이 수산자원관리 강화와 수산물시장의 전면개방화로 급변
  - UN 해양법 협약 : 조업구역 축소 →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 수산자원관리 강화 : 과잉어획노력량 감소 정책
    - 2006년까지 연근해어선 5,114척 감척
  - WTO/DDA 협상 : 무역이나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금지 → 수산업 위축 불가피
  - FTA 협상 : 수입수산물 관세인하 → 국내 경쟁력 열위 업종 및 품종피해 불가피
-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

### 2. 국내 여건변화

- 수산업 분야
  - 연근해 어획량 지속적 감소와 양식어업 생산량의 점진적 증가
    - '86년) 연근해 어획량 170만톤 → '07년) 115만톤
    - '07년에 양식어업이 139만톤으로 연근해보다 24만톤이 많음
  - 연근해어업 경영여건(수익성) 악화
    - 총자본이익율 감소 '80년) 25% → '05년) 10%
  - 수산물에 대한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식 고조
    -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90년) 36.2kg → '06년) 54.2kg

## □ 어촌 분야

- 타산업과의 어가소득 격차확대 및 양극화 심화
  - '06년 어가소득은 30백만원으로 도시가계소득의 72.6%<sup>1)</sup>임
  - 교육, 의료, 복지, 문화부문에서 격차
-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정주기반 약화
  - '90년) 어가인구 496천명 → '06년) 211천명 → '07년) 201천명
  - '90년) 고령화(60대 이상) 10.8% → '06년) 30.3% → '07년) 32.1%
- 최근 생산(1차산업), 가공(2차산업), 체험관광 등 각종 서비스(3차 산업)을 통합한 6차산업 추진으로 다양한 소득원 창출이 기대
  - ⇒ 전남 보성군의 경우 지역특산물인 녹차를 이용한 6차산업 효과 거양
    - ※ 녹차밭에서 녹차 생산 → 2차 제품가공 → 녹차체험관광, 녹차해수탕 등 다양한 체험관광서비스 제공
- 다원적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서 어촌 재발전 → 어촌을 국민의 휴양, 교류, 체험, 학습의 장으로서 인식
  - 어촌체험마을 방문 관광객 '01년)172천명 → '06년)6,591천명
  - 어촌체험마을 관광소득 '01년)8억원 → '06년)445억원

1) 도시소득 : 41백만원, 어촌소득 30백만원

## □ 어항 분야

- 국가어항 항내수질, 항내퇴적 및 시설노후화 등으로 어항정비 및 어항환경개선 요구 증대
  - 2006년까지 104개 국가어항 중 기설 및 시공 중인 시설물은 649개소임. 구조물의 시설연도가 20년 이상인 '95년 이전에 시설된 구조물이 노후된 상태로 볼 수 있음.
    - ※ '95년 이전에 기 시설물은 170개소로 약 26%를 차지
- 주로 어업인 위주로 이용되던 어항이 교통, 관광, 정보 등의 다기능화에 따라 전 국민으로 이용확대 추세
- 도시민의 휴식 및 관광활동 장소, 어업인 편의시설 및 수산업 부가가치 제고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종합 기능 수행 요망
- 해양환경변화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어항개발 요구 집중

## □ 관광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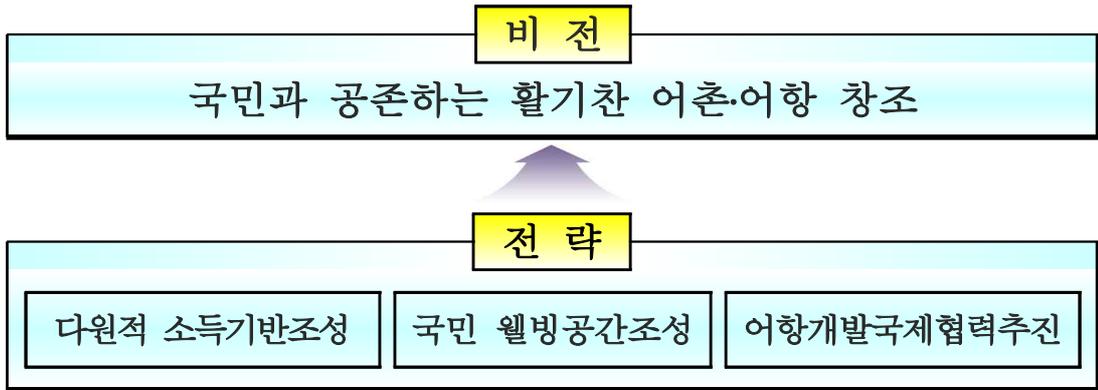
- 주5일 근무제 정착, 교통망 확충,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과 해양지향의 관광패턴 붐으로 바다, 해수욕장, 갯벌, 특산수산물 및 관광어항 등 어촌의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민관광 : '05년)381백만명 → '13년)622백만명
  - 어촌관광 : '05년) 95백만명 → '13년)167백만명
- 유어낚시, 요트 등 선진국형 해양레저 수요의 증가로 해안 및 내수면을 찾는 인구 급증 전망
  - 해양레저기구의 규모 '04년) 6,372척 → '13년)28,302척

### 3. 정책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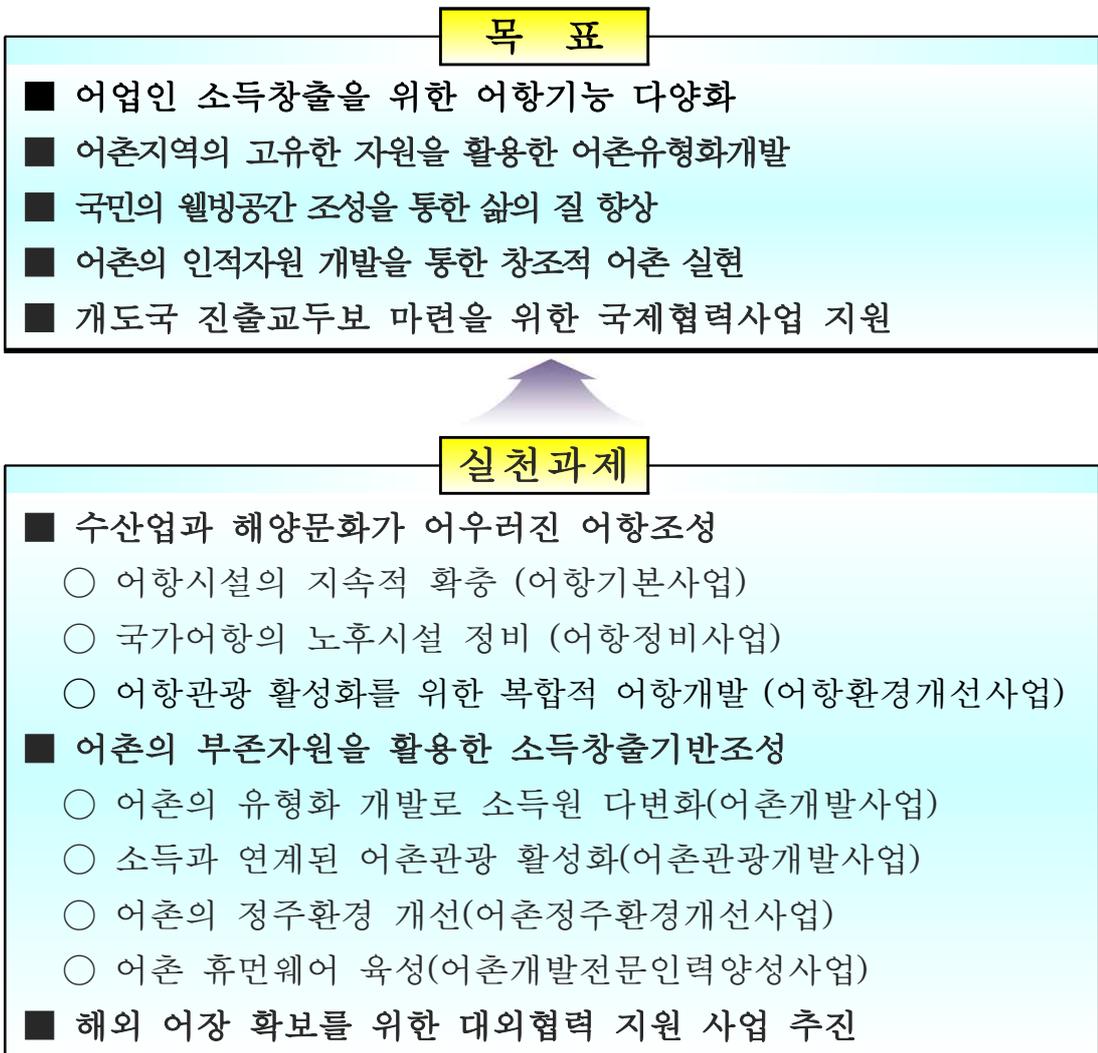
구분	기존정책	패러다임 변화
수산정책 범위	수산업 중심	수산업·수산자원·가공산업·어업인·어촌의 통합 정책
지원방식	균형적 지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수산업방향	생산중심	소비자 안전·품질·소비 및 수출 중심
어촌·어항 공간	가치중심	생산+정주+소비+휴양공간으로 통합
개발방향	어업인·어촌중심	어업인·소비자·국민에게 열린 어촌·어항 공간
개발범위	국내중심	개도국 어항개발 지원사업 확대

### Ⅲ. 어촌·어항개발 정책방향

#### 1. 비전과 전략



#### 2. 새로운 정책방향



## IV.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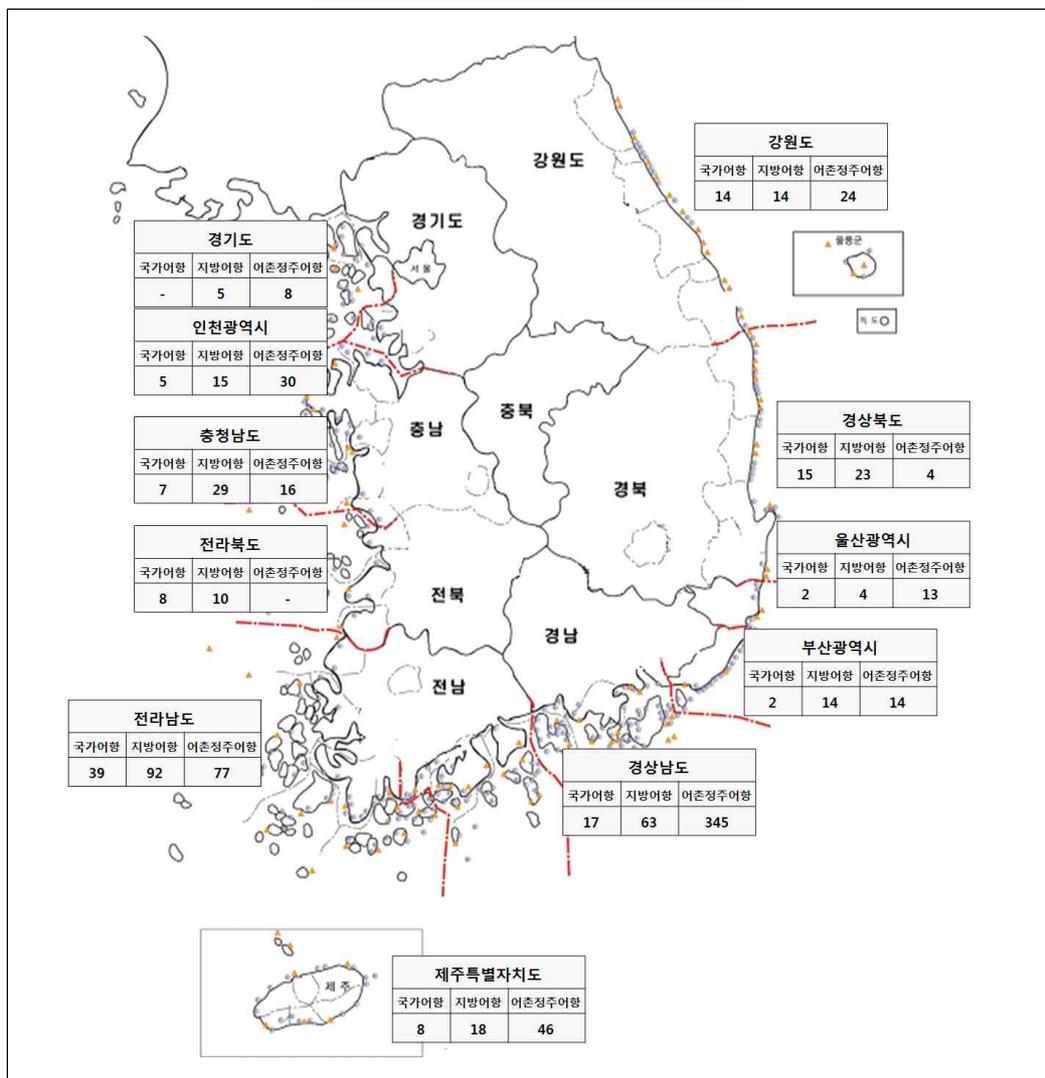
### 1. 수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어항 조성

#### 가. 일반 현황

##### □ 어항의 종류 및 지정현황

- 어촌어항법에 의거 지정된 어항은 국가어항 104개소, 지방어항 287개소, 어촌정주어항 579개소 등 970개항이며, 이외에 비지정 소규모포구 1,334개소가 전국 연안에 분포

#### 어항 지정현황



### 〈어항의 종류 및 현황〉

구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정의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 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지정권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권자	광역시장, 시장·군수	광역시장, 시장·군수	시장, 군수, 구청장
지원조건	국고 100%	국고 80% 지방비 20%	지방비 100%
지정/ 완공항수	104개 항/90개 항	287개 항/134개 항	579개 항/133개 항
총사업비/ '07까지 투자액	33,308억원/ 23,595억원	19,849억원/ 9,934억원	13,791억원/ 7,860억원

#### □ 어항의 기능

##### ○ 기본적 기능

-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수용 및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어업활동 지원기지
  - 산지(어항)에서 가공·처리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  
⇒ 선도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 항내 수면을 고급어류의 일시 축양장으로 활용  
⇒ 출하시기 조절 및 고가 판매 가능

○ 부수적 기능

- 해상교통 및 물류기지
  - 도서·벽지 어촌과 외부사회를 연결하는 교통·정보의 기지
  -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유통기지
- 해양관광 및 문화공간 제공
  - 바다와 관련된 문화·레저활동(낚시배, 요트, 유람선 등) 및 음식점, 휴게·숙박시설, 주차공간 등 제공
- 기르는 어업 등 자원관리형 재배어항 역할
  - 종묘생산 및 중간육성장, 활어일시보관장소 등으로 어업 자원 보호육성

□ 어항개발사업의 종류

- 어항 개발사업은 어항기본사업, 어항정비사업, 어항환경 개선사업으로 구분<sup>2)</sup>하여 추진
- 국가어항은 기본사업,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을 병행 추진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재정 여건상 기본사업 위주로 추진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

어항기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li> <li>* 방파제, 물양장, 호안, 정박지 등</li> </ul>
어항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li> <li>* 기존 방파제, 물양장, 호안 등 보수·보강·확장</li> </ul>
어항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 개선사업</li> <li>* 공동작업장, 창고, 여객터미널, 주차장, 화장실, 해수소통구 등 어항기능시설 및 환경시설</li> </ul>

2)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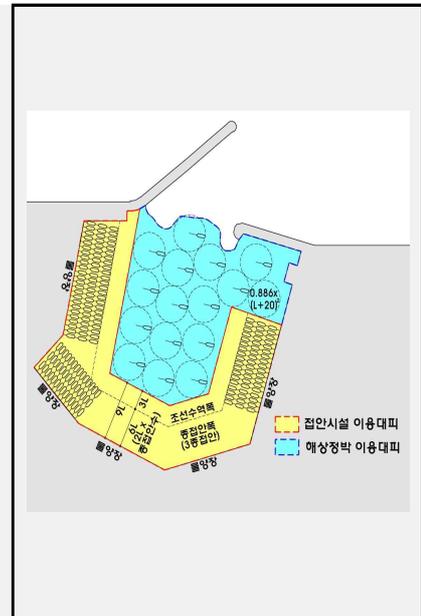
## 나. 어항개발규모 산정

### □ 어항 수요 검토

- 전국 총어선은 86,113척(2006년 기준)에서 어선감척실적 및 계획을 반영하여 목표연도인 2013년에 80,370척으로 무동력, 원양,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수용대상어선 76,313척 중 60,260척이 기존의 국가어항(54%), 지방어항(19.3%), 무역항 및 연안항(26.7%)에 수용 가능함

### <수용가능 어선척수>

구 분	계	국가어항 (104개항)	지방어항 (287개항)	항 만 (40개항)
계	60,260척	32,541척 (54%)	11,628척 (19.3%)	16,091척 (26.7%)
접안시설 이용	51,159척	27,202척	7,866척	16,091척
동 해	7,701척	4,147척	1,372척	2,039척
서 해	14,779척	7,800척	2,159척	4,820척
남 해	28,679척	15,255척	4,335척	9,089척
해상정박 이용	9,101척	5,339척	3,762척	-
동 해	470척	265척	205척	-
서 해	3,273척	1,949척	1,324척	-
남 해	5,358척	3,125척	2,233척	-



- 수용대상어선 76,313척 중 수용가능어선 60,260척을 제외한 나머지 16,053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어항 30개 추가 지정 필요

**<국가어항 개발 필요항수(2013년 기준)>**

구분	어선추정 결과	수용대상 어선척수	수용가능 어선척수	안전수용 률(%)	수용필 요척수	항당수용 가능척수	국가어항 개발항수
전국	80,370	76,313	60,260	79.0	16,053		30
부산	4,089	3,847	2,290	59.5	1,557	213~568	3
인천	2,538	2,506	2,046	81.6	460	246~339	2
울산	1,015	796	425	53.4	371	395~549	1
경기	2,498	1,317	259	19.7	1,058	339~396	2
강원	3,380	3,153	3,153	100	-	359~470	-
충남	6,181	5,998	5,200	86.7	798	339~396	2
전북	4,294	5,214	3,394	80.5	820	250~396	2
전남	32,130	30,995	23,132	74.6	7,863	246~568	13
경북	3,998	4,059	4,059	100	-	395~430	-
경남	16,717	16,223	13,097	80.7	3,126	409~568	5
제주	3,063	3,205	3,205	100	-	444	-

□ 어항별 필요항수 산정

- 국가어항 수요 검토결과 필요항수 30개 추가지정 시 현재 104개항에서 134개항으로 확대
  - 단기(2009~2013년) 6개 지정, 장기(2014~2023) 24개 지정
  - 추가수요 30개항은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을 항종변경
- 지방어항의 경우 국가어항으로 항종변경에 따라 현재 287개에서 258개로 축소
- 어촌정주어항은 1개항을 국가어항으로 항종변경하여 현재 579개에서 578개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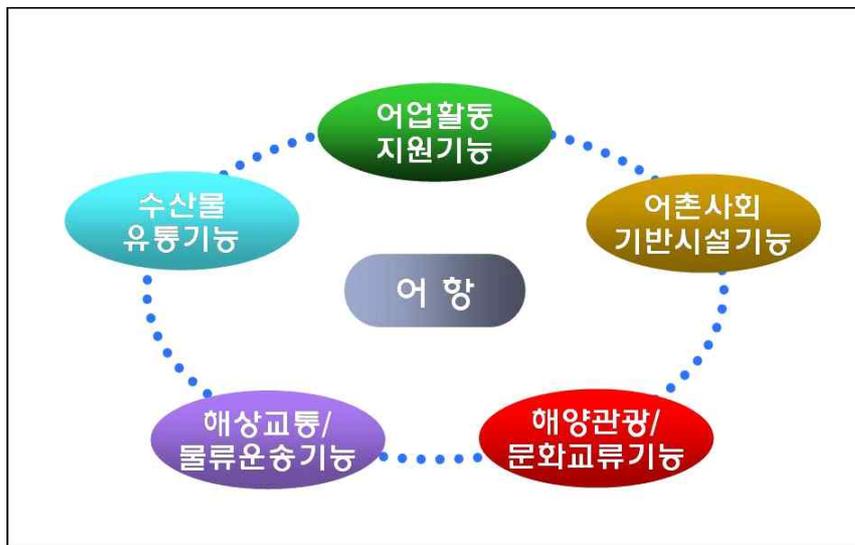
### 〈어항별 필요항 수〉

구분	필요항수	기지정항수 (’06년기준)	지정 및 해제		
			계	단기	장기
국가어항	134	104	30	6	24
지방어항	258	287	(-)29	(-)5	(-)24
어촌정주어항	578	579	(-)1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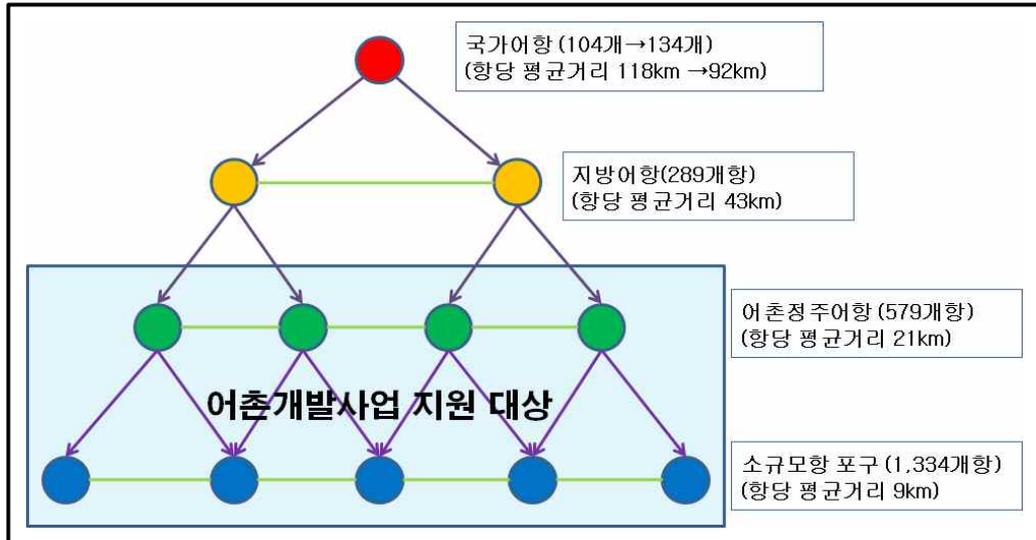
#### 다. 어촌·어항 연계개발

- 어항의 기능은 어업활동 지원기능, 수산물유통기능, 어촌사회 기반시설 기능, 해상교통 및 물류운송기능, 해양관광 및 도시와의 문화교류 기능 등으로 구분
- 어항기능 중에서 어촌사회 기반시설 기능, 해양관광 및 도시와의 문화교류 기능 등이 직·간접적으로 어촌과 연계 개발되고 있음.

### 〈어항의 기능〉



- 어촌개발사업(1단계 160개권역) : 어항시설 47%, 해안시설 19%, 편익시설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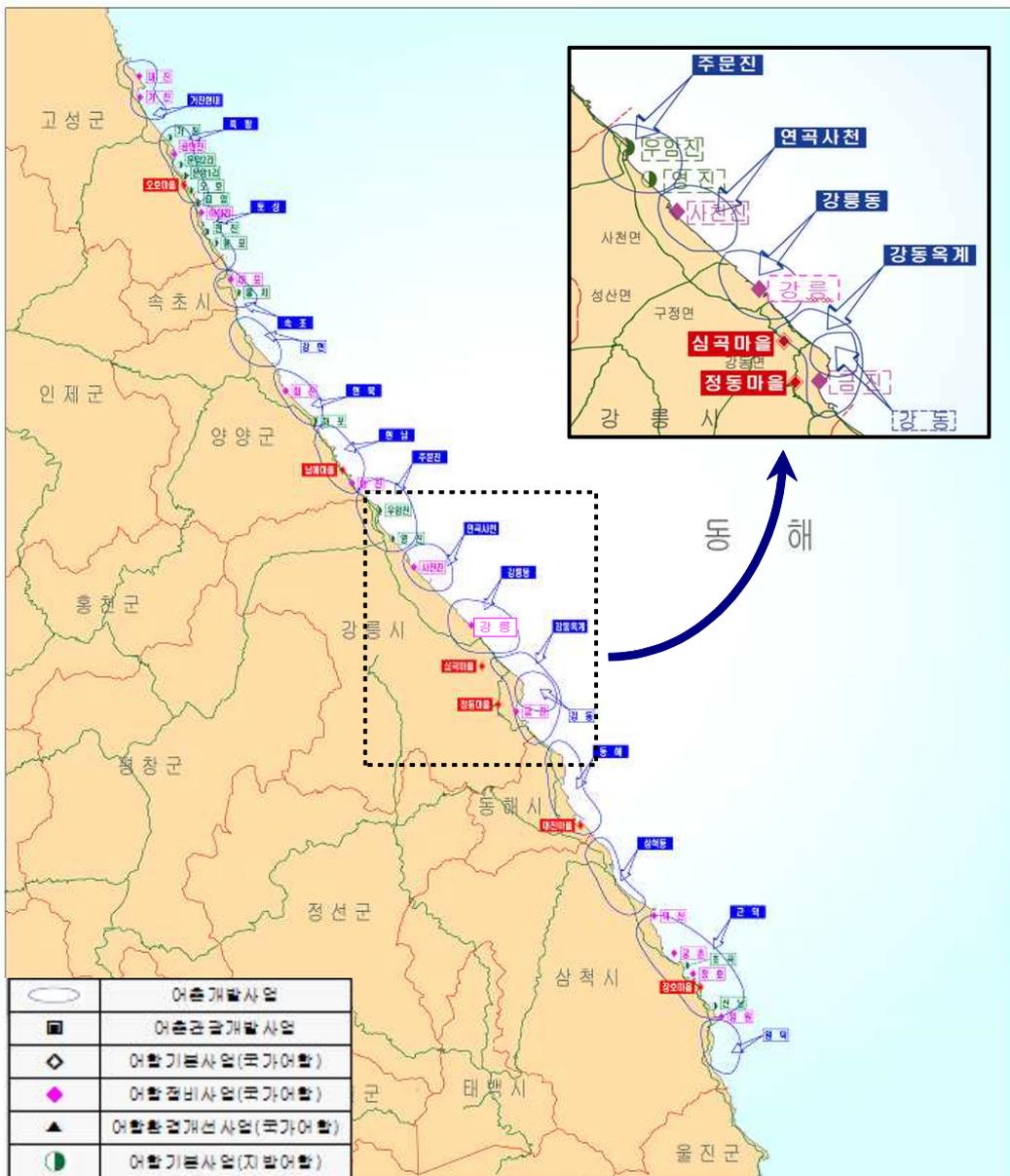
- 지정어항 24개(국가어항 13개, 지방어항 8개, 어촌정주어항 3개소)를 선정하여 교통, 관광, 유통, 해양레저 등의 다기능어항을 어촌과 연계개발 추진중임.

<어항별 연계개발 현황>

항종	항명	사업비(항당)
국가어항	어유정항, 정자항, 강릉항, 마량항, 양포항, 맥전포항, 모슬포항(7개항)	어촌 : 50억원 어항 : 100억원
	대변항, 대포항, 흥원항, 격포항, 국동항, 지세포항(6개항)	어항 : 500억원 *어촌부문 포함
지방어항	대항항, 전곡항, 무창포항, 야미도항, 방축항, 전촌항, 학림항, 법환항(8개항)	어촌 : 60억원
어촌정주어항	초지항, 대송항, 대진항(3개항)	어촌 : 60억원

- 국가어항 배후부지에 어촌의 생산기반 및 정주기반시설 등 어항기능시설 지원 추진
- 어촌과 어항의 연계개발을 위해 어촌개발사업 지원대상 중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항포구에 대한 어항시설 지원

<어촌·어항 연계 개발 예시(강원도 강릉)>



## 라.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1) 어항시설의 지속적 확충(어항기본사업)

#### ○ 현황

- 외해로부터 파도를 막아주는 외곽시설(방파제 등)과 어선이 항내로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물양장 등) 및 수역시설(항로, 정박지 등) 등의 항별 기본사업 추진

구분	지정항수			
	계	'07까지 완공	'08 완공	미완공항
국가어항	104	90(87%)	2	12
지방어항	287	134(46%)	10	143
어촌정주어항	579	133(23%)	9	437

※ ( )내는 완공율임

#### ○ 문제점

- 지정어항의 기본시설이 완공되더라도 어선안전수용율은 79%에 불과하며, 어항개발규모 산정결과 국가어항 30개의 추가지정이 필요
- 지방어항은 국비 80%가 지원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상 국가어항에 비해 투자가 미흡하여 완공율 저조
- 어촌정주어항은 현재까지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완공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

○ 실천방안

**국가어항**

- 기 지정된 104개항 중 미완공 12개항을 2012년까지 조기 완공 달성

구분	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완공항 (항수)	12	1	1	1	5	1	2	1

- 국가어항 지정 필요항수 30개항 중 시·군·구별로 어선안전 수용율이 100% 미만이고,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6개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여 개발

※ 201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7년까지 사업 완공

시도별	계	부산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신규지정항	6개항	천성	궁평	장고	이목	노량, 남포

- 30개항 중 '08년 지정대상 6개항을 제외한 24개항에 대해서는 총수방식<sup>3)</sup>을 도입하여 2012년에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평가를 하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시·도	항수	국가어항 지정 기준 부합항('07년말 기준)
계	24	
부산	2	민락(수영구), 명지(강서구)
인천	1	진두(옹진군)
충남	6	고대도(보령시), 호도(보령시), 삼시도(보령시), 백사장(태안군), 영목(태안군), 장고(당진군)
전북	2	선유도(군산시), 개야도(군산시)
전남	4	법성(영광군), 재원(신안군), 수대(신안군), 응곡(신안군)
경남	4	견유(통영시), 진촌(통영시), 장목(거제시), 단항(남해군)
기타	5	추후 재산정

3)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항을 해제한 항수만큼 지정 기준에 부합되는 항으로 대체하여 개발하는 방식

## 지방어항

- 지방어항의 경우 신규지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완공율 제고
  - 완공율 : ( '07년) 46% → ( '13년) 70% → ( '23년) 100%
- 지방어항 완공율 제고를 위해 총수방식 적용배제

## 어촌정주어항

-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비지원(국비 80%, 지방비 20%) 검토
  - 완공율 : ( '07년) 23% → ( '13년) 33% → ( '23년) 75%
  - 어촌정주어항 완공율 제고를 위해 총수방식 적용배제
    - ※ 어촌정주어항의 국비지원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어촌정주어항을 조기개발 하도록 정책방향 유도

##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09~' 13)	중장기( '14~' 23)
어항기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12개항 완공</li> <li>- 6개항 추가지정 및 사업착수</li> </ul> </li> <li>○ 지방어항 완공율 70% 달성</li> <li>○ 어촌정주어항 완공율 33% 달성</li> <li>※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평가 (2012년, 5억), 24개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항 완공</li> <li>- 추가지정 24개항 사업 착수</li> </ul> </li> <li>○ 지방어항 : 완공율 100% 달성</li> <li>○ 어촌정주어항 : 65% 완공</li> </ul>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개항, 억원)

구분	총계	단기계획						중장기 계획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8,843	6,864	1,489	1,495	1,406	1,116	1,358	21,979	
국가 어항	완공 항수	42	12	2	5	3	2	6개 공사착수	30
	사업비	10,871	2,171	662	617	471	121	300	8,700
지방 어항	완공 항수	144	52	9	10	10	11	12	92
	사업비	12,832	3,375	587	628	672	719	769	9,457
어촌 정주 어항	완공 항수	218	57	10	11	11	12	13	161
	사업비	5,140	1,318	240	250	263	276	289	3,822

- ※ 1. 지방어항의 경우 사업비는 국비 80%, 지방비 20%의 합계임  
 2. 추가지정이 필요한 30개항에 대한 추진계획

**6개 항은**

- '08년 : 지정고시
- '09~'11년 :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  
(6개×5억원=30억원)
- '12~'13년 : 6개 공사착수(6개×50억원 = 300억원)
- '14 ~ ' 18년 : 공사완공(6개×250억원 = 1,500억원)

**24개 항은**

- '12년 : 타당성조사용역
- '14년부터 : 단계적으로 개발 착수(24개×300억원=7,200억원)

## 2) 국가어항의 노후시설 정비(어항정비사업)

### 가) 어항시설물 정비

#### ○ 현황

- 국가어항의 노후시설 보수·보강 및 어항기능 제고를 위해 기존 완공항 중 44개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 중

(단위 : 항수)

시도별	계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비대상 국가어항	44	3	4	5	4	14	8	3	3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태·폭풍 등 기상악화 시 피해 방지시설 및 노후시설 보강사업에 한해 투자

#### ○ 문제점

- 2006년까지 104개 국가어항 중 기 시설 및 시공 중인 구조물 649개 중 '95년 이전에 시설된 구조물은 170개로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항구조물의 내구년도를 20~30년<sup>4)</sup>으로 볼 때 이들 구조물은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임

(단위 : 개소, %)

시설 완료 년도	계	동해	남해	서해	비율
1995년 이전	170	52	66	52	26
1995~2005년	412	103	219	90	64
2005년 이후	67	14	31	22	10
합 계	649	169	316	164	100

4) 근거 : 일본토목학회 및 콘크리트 공학협회에서 제시한 내구수명 규정

○ 실천방안

-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44개항 중 24개항은 2013년 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20개항은 2023년까지 완료
- 정비대상어항 중 개발잠재력이 있으나 시설이 노후된 3개 어항(어유정항,대포항,사천진항)의 리모델링을 2013년까지 완료
- 잔여 55개항(설계과고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 5개항 제외)은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 상태 확인 관리, 정비가 시급한 어항에 대해 정비계획에 반영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09~' 13)	중장기( '14~' 23)
어항정비사업	○ 국가어항 24개항 정비사업 완료 (리모델링 3개항 포함)	○ 국가어항 20개항 완공 · 리모델링 계속 추진

※ 안전점검결과 정비가 시급한 어항은 정비계획에 별도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개항, 억원)

구분	총계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어항정비사업	항수	44	24	2	7	3	5	7	20
	사업비	17,573	3,962	391	551	766	1,095	1,159	13,611

※ 항수는 정비사업 완료 항수임

나) 해수면 상승 및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 현황

- 1976년에서 2006년까지 31년간 38개 어항의 피해사례 분석 결과 태풍 등에 의한 피해의 대부분은 방파제에 집중되며, 피해가 2회 이상 발생한 항이 약 70%로 반복 피해사례가 많음
- 최근 해수면 상승 및 잦은 대형태풍 내습으로 시설물 피해가 커짐에 따라 2005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전해역 심해설계파」를 재산정한 결과 파고가 최대 3m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 발표

〈최근 5년간 국가어항 피해현황〉

(단위 : 천원)

권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피해 항수	피해액 (천원)								
부산	-	-	1	1370	1	9855	-	-	-	-
인천	-	-	-	-	-	-	-	-	-	-
울산	-	-	1	10	-	-	-	-	-	-
경기	-	-	-	-	-	-	-	-	-	-
강원	-	-	1	300	1	129	-	-	1	400
충남	-	-	-	-	-	-	-	-	-	-
전북	-	-	1	98	-	-	-	-	-	-
전남	-	-	3	3172	1	377	-	-	-	-
경북	-	-	3	1434	2	1056	1	72	4	413
경남	-	-	2	61	7	2674	-	-	-	-
제주	-	-	1	30	2	297	-	-	-	-
계	-	-	12	6,445	12	14,091	1	72	5	813

※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2004년 「메기」, 2005년 「나비」의 영향

- 2005년 이후 재산정한 심해설계파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이 수립된 항은 5개항(경북 4개항, 경남 1개항)임.

○ 문제점

- 과거 어항구조물 설계에 적용된 심해 설계과는 '88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5년 재산정 발표된 「전해역 심해설계과」 결과, 기존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 및 보강방안이 요구
-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없을 경우 대형태풍 내습으로 인한 구조물 피해확산 및 어선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

○ 실천방안

- 설계과고 상향에 따른 정비계획이 기 수립된 5개항의 정비사업 추진(2013년까지 1개항 완료)
- 설계과고 상향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
  -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남해안(44개항)을 우선검토, 동해안(29개항), 서해안(26개항) 순으로 정비계획 수립
-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설계과고 상향 조정에 따른 기존 항만 시설물의 안전성 및 보강계획 기준 수립에 대한 용역(한국해양연구원, '06~'10)이 추진 중에 있음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단기( '09~' 13)	중장기( '14~' 23)
어항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과고 상향조정에 따른 정비계획 기 수립 5개항 정비사업 계속 추진 (1개항 완료)</li> <li>- 사업비 : 965억원</li> <li>○ 설계과고 상향조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2011~2013년, 30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과고 상향조정에 따른 기 수립된 잔여 4개항 정비사업 완료</li> <li>- 사업비 : 874억원</li> <li>○ 설계과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li> <li>- 추정사업비 : 약550억원</li> </ul>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개항, 억원)

구 분		총계	단 기 계 획						증장기 계획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어항 정비 사업	항 수	5	1	(3)	(4)	(5)	(5)	1(4)	15
	사업비	2,419	995	80	140	215	236	324	1,424

※ 항수는 정비사업 완료 항수임

다) 항내 매물 토사(준설토) 처리 문제

○ 현황

- 해양환경관리법 상 어항건설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사는 해양 폐기물로 분류되어 이의 처리를 위한 공사비 증가요인 발생
- 104개 국가어항에 기 계획되어 있는 준설토사는 약 3,128만<sup>m</sup>³ 로써 2008년까지 2,805만<sup>m</sup>³를 준설퇴하고, 잔여 준설퇴량이 323만<sup>m</sup>³(준설퇴비용 390억원)이 남아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매물 현상으로 인해 준설퇴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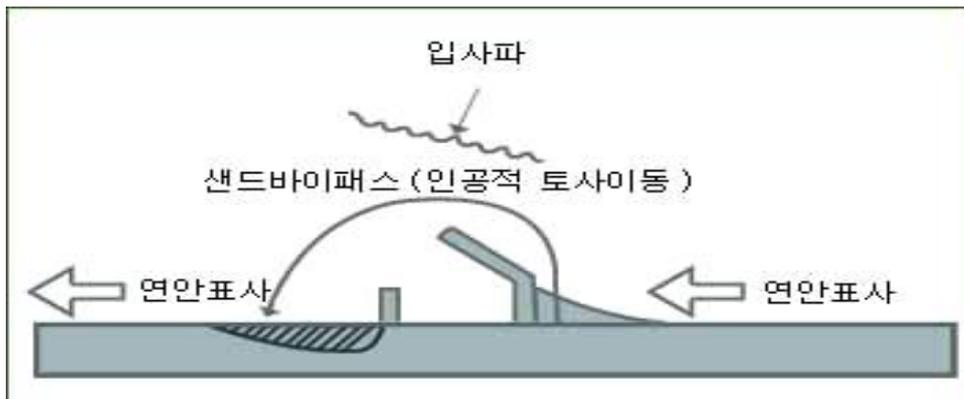
- 과거에 준설퇴 처리는 항내 준설퇴투기장 조성 또는 공해상에 허가를 받아 투기하여 왔으나, 최근 보존위주의 환경정책으로 인한 규제강화로 준설퇴 투기장 조성 및 외해투기에 어려움
- 어항공사 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준설퇴사의 처리를 위한 막대한 국비투자로 국고낭비 우려
- 준설퇴 투기장 조성 및 외해 투기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외부지역 준설퇴사 반입 금지 등), 환경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마찰

※ 최근 구,해양수산부에서 준설토사의 유용 기준마련을 위해 「준설토사 처리 및 유효활용 기준수립(2007.6)」 용역을 추진하여, 양질의 준설토사 활용기준 및 유효활용방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나 무산

○ 실천방안

- 어항개발이 지역개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준설토 처리(해상투기, 투기장 조성, 준설토 유용 등)에 따른 문제는 어항 및 공유수면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해결하는 조건으로 국가어항 지정·개발 추진
- 해역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해안은 유용, 서남해안은 항별 투기장 또는 공동 투기장 확보

<준설토 유용(양빈공법)에 의한 침식·매몰대책>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09~' 13)	중장기( '14~' 23)
어항정비 사업	○ 매몰토사(준설토) 처리 (124만 <sup>m</sup> <sup>3</sup> , 150억원)	○ 매몰토사(준설토) 처리 (199만 <sup>m</sup> <sup>3</sup> , 240억원)

※ 사업비는 “가) 어항시설물정비” 사업에 포함  
 ※ 추가로 발생하는 유지준설은 별도 계획에 반영

### 3) 어항관광활성화를 위한 복합적 어항개발(어항환경개선사업)

#### 가) 다기능 어항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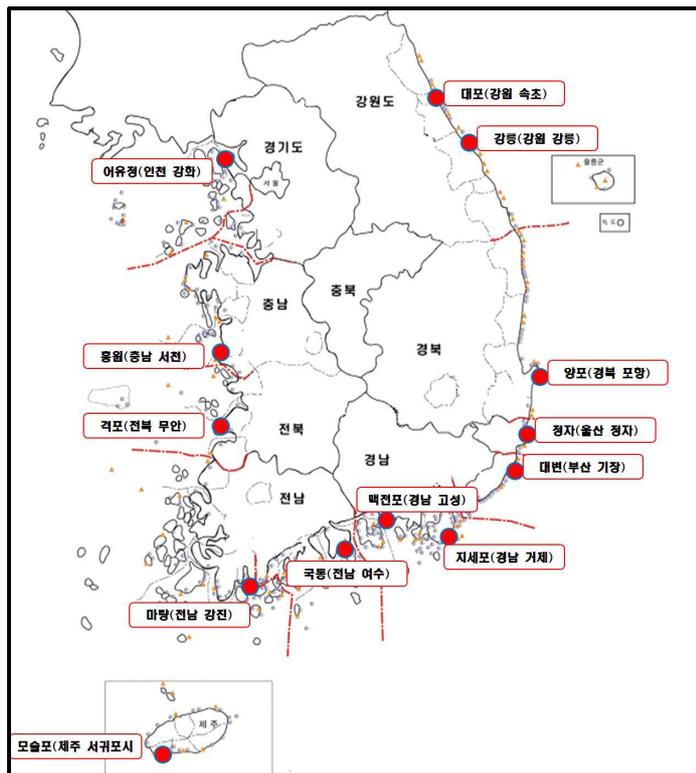
##### ○ 현황

-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과거 어항기능이 단순 수산물 생산중심 기능에서 어촌관광, 해양레저, 해상교통 등 복합다기능어항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 2004년 기지정된 국가어항 중 다기능어항 13개소를 선정 2013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

#### <다기능어항 지정항수>

(단위 : 항수)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	1	1	1	-	2	1	1	2	1	2	1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어항에 수산업 기능뿐 만 아니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어항을 부각시킨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설치시설 : 관광레저용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소득 시설,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등
- ※ 어촌어항법 제18조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어항관광구역에는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 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 문제점

- 어항기능의 다변화를 위해 다기능어항 13개항을 선정,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어항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어항 개발 미흡
- 13개 다기능어항의 시설계획이 친수공간 위주의 시설로써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개발 미흡
- 2013년 기 선정된 다기능어항 완공 후 사업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어 연차적 확대개발방안 수립이 필요
- 어촌의 직접소득사업과 직결되는 회센타·숙박시설 등 소득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곤란

## ○ 실천방안

-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기능어항 13개항을 2013년까지 완료
- 다기능어항에 대해 사업모니터링(2008년) 및 사후평가(2012년)를 시행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 2014년부터 2차 다기능어항 개발 추진
  - ※ 2004년 다기능어항 선정 시 개발 후보항으로 예정된 5개항(감포항, 녹동항, 미조항, 안흥항, 삼길포항)은 2차 다기능어항 개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
- 2차 다기능어항 계획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어항 개발 개념 도입(낚시공원형, 관광레저형, 체험여가형, 가공유통형, 자원조성형 등)
- 또한 노후어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 수산업 중심기능 뿐만 아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산물유통·가공, 어촌 관광·생활거점기능 등 다양한 기능어항으로 계획 시행
- 어촌의 어업 외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민의 수익사업 참여 유도 등 민자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기회 확대

### (예시1) 국내사례

- 경북 영덕군 강구항의 경우 항 인근에 볼거리로서는 삼사해상공원, 해맞이공원 등 유명하며, 먹거리는 영덕대게 및 풍부한 수산물, 인근에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어 설거리 제공과 동해안 남북을 연결하는 7번 국도 교통망이 연계되어 풍부한 수산자원과 수려한 어항 풍경의 테마의 관광어항으로 개발 가능

(예시2) 국외사례

- 일본 타루미어항의 경우 수산물 가공, 요리, 판매시설 등 아울렛 매장을 유치하고 별도로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종묘생산, 대규모의 김양식업을 통해 어장, 어항, 어촌, 관광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일본 마루야마 어항은 어항 인근에 낚시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어항 개발

< 아울렛매장 시설 및 낚시공원 >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09~' 13)	중장기( '14~' 23)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기능어항 13개 항을 2013년까지 완료</li> <li>○ 단기계획 완료 단계에서 (2012년) 사후평가를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다기능어항사업 확대 추진</li> </ul>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개항, 억원)

구분	총계	단기계획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다기능어항개발사업	항수	9	9	1	4	1	2	1
	사업비	1,278	1,278	332	400	258	188	100

※ 13개항 중 4개항은 '08년까지 사업 완료

## 나) 어항기능시설 확충

### ○ 현황

- 어항이용 및 활용이 어업인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 장소, 어업인 편의시설 및 수산업 부가가치 제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항개발 필요성 제기
  - 어항환경개선사업 중 관광기능시설과 어항정화시설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항에 정의되어 있으나, 과거의 어항에 대한 관점이 단순 수산물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어항기본시설에 역점을 두고 투자
  - 최근 어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관광레저, 체험활동 등 다양한 기능에 이미지를 요구함에 따라 어항의 환경개선을 통해 공익기능을 갖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증진하고,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이 필요
  - 서·남해안 지역은 평균 조위차가 2m~6m로써 간조시 소형 어선의 용이한 접·이안 및 양육을 위하여 수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잔교 시설이 절실한 실정임
- ※ 어항환경개선시설 : 여객대합실, 공동화장실, 도로, 주차장, 가로 등, 해수소통구, 부잔교, 기자재창고, 어구건조·야적장, 해수인수시설, 급수시설, 광장·조경시설, 다목적체육시설, 공연장 등

### 〈서·남해안 지역 부잔교 설치 현황〉

해역	항수	부잔교 설치 항수	부잔교 설치어항(개수)
서해안	28	7개 항 (11개)	안흥(1), 외연도항(1), 흥원항(3), 격포항(2), 연도항(전북)(1), 위도항(2), 서망항(1),
남해안	38	17개 항 (22개)	마량항(1), 득암항(1), 청산도항(1), 녹동항(2), 풍남항(1), 여호항(1), 발포항(1), 시산항(1), 국동항(1), 낭도항(1), 안도항(1), 초도항(2), 연도항(전남)(1), 구조라항(2), 원전항(3), 호두항(1), 매물도항(1)

## ○ 문제점

- 주5일근무제 시행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어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각종 기능편익시설이 미비
- 그 동안 어항기본시설 위주의 투자로 인해 어업인의 작업 여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기능시설 지원 미비
- 서·남해안 지역 어항은 평균 조위차가 2m~6m로써 간조시 소형어선의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부잔교 시설 미비
- 현재까지 부잔교 시설은 전체 어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개별 어항별로 지역주민 건의 등에 따라 산발적으로 부잔교 설치 또는 이용자 단체인 수협 또는 어촌계에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으로 주로 설치

## ○ 실천방안

- 어항의 양적 개발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능 목적의 어항환경개선사업 도입
  - 해수소통구 설치 등 항내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 시설 확충
    - ※ 해수소통구 설치현황 : 기계획 35개 항, 장래계획 59개 항
  -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시설(야적장, 기자재 창고, 어구건조장, 해수인·배수시설, 화장실 등) 확충
  - 현대적 생활중심자복합공간으로의 개발(공원, 광장, 체육시설 등)
- 어항의 기능제고 및 환경개선으로 어항의 질적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공익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구 보관창고 등 4개 기능시설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매년 14개 공익성격의 기능시설 확충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14개 기능시설 완료 후 수익시설에 대한 지원 검토

- 2009년부터 부잔교 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부잔교 시설 설치
  - ※ 2007년 현재 부잔교 설치 대상항으로 조사된 남해안 13개항, 서해안 20개항에 시설 계획 반영
- 서·남해안에 위치한 어항의 정비계획 수립시 부잔교 등 소형어선 접·이안 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반영

### 〈어항기능시설 종류 및 우선순위〉

우선순위	해 당 시 설 물	비 고
I	여객대합실, 공동화장실, 도로, 주차장, 가로등, 해수소통구 부잔교, 기자재창고, 어구건조·야적장, 해수인수시설, 급수시설	공공 이용
II	광장·조경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공연장	문화시설

※ 지역특성 및 어항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행

###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단기( '09~' 13)	중장기( '14~' 23)
어항기능시설 확충	○ 5개 시설 완료 (여객대합실, 공동화장실, 해수소통구, 부잔교, 기자재창고)	○ 잔여 9개 시설 완료 ○ 완료후 수익시설로 사업 확대

※ 항별 이용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가능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단 기 계 획							중장기 계획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어항기능 시설확충	사업비	16,890	2,281	41	63	373	807	997	14,609

마. 어항 투자 계획

- 어항의 투자규모는 우리나라의 '08년 경제성장율에 맞춰 연 증가율을 약 5~8% 증가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편성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구)기획예산처(2007.4))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단 기 계 획						증장기 계획		
		소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비	67,003	15,380	2,333	2,649	3,018	3,442	3,938	51,623		
계	28,843	6,864	1,489	1,495	1,406	1,116	1,358	21,979		
어항기본사업	국가	완공항수	42	12	2	5	3	2	6개착수	30
		사업비	10,871	2,171	662	617	471	121	300	8,700
	지방	완공항수	144	52	9	10	10	11	12	92
		사업비	12,832	3,375	587	628	672	719	769	9,457
	정주	완공항수	218	57	10	11	11	12	13	161
		사업비	5,140	1,318	240	250	263	276	289	3,822
계	19,992	4,957	471	691	981	1,331	1,483	15,035		
어항정비사업	국가	완공항수	44	24	2	7	3	5	7	30
		사업비	17,573	3,962	391	551	766	1,095	1,159	13,611
	설계과증가	완공항수	16	1	(3)	(4)	(5)	(5)	1(4)	15
		사업비	2,419	995	80	140	215	236	324	1,424
계	18,168	3,559	373	463	631	995	1,097	14,609		
환경개선사업	다기능어항	완공항수		9	2	3	1	2	1	
		사업비	1,278	1,278	332	400	258	188	100	추가지정 여부 결정)
	기능시설	16,890	2,281	41	63	373	807	997	14,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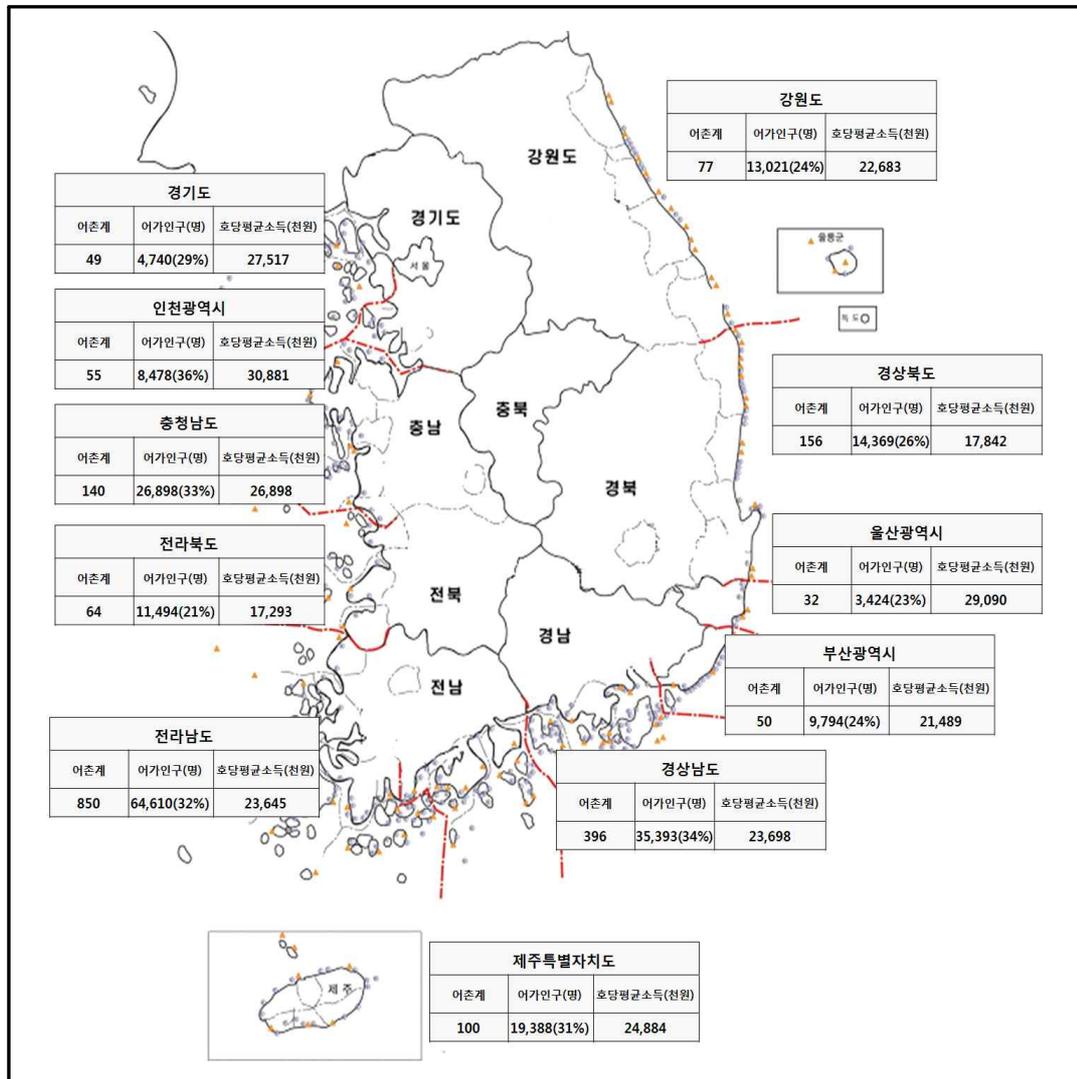
※ 2008년 예산 : 2,590억원(기본사업,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

## 2.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기반조성

### 가. 일반 현황

-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어촌계는 1,969개(이하, '06년 기준), 어가수는 163,747호, 어가인구는 211,610명이며, 어촌계의 호당 평균소득은 약 30백만원이고, 전국 어가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는 30.3%를 차지

### <전국 어촌계 현황>



※ 어가인구 ( )는 60세이상 어가인구 비율임.

5) 사전('08), 사후('12)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지정 여부 결정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어촌개발사업 232권역[(1단계:160개 권역 ('94~'06년), 2단계:72개 권역('07~'13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112개소('01~'13년), 어촌관광개발사업 18개소('04~'13년)임.

〈어촌관련 개발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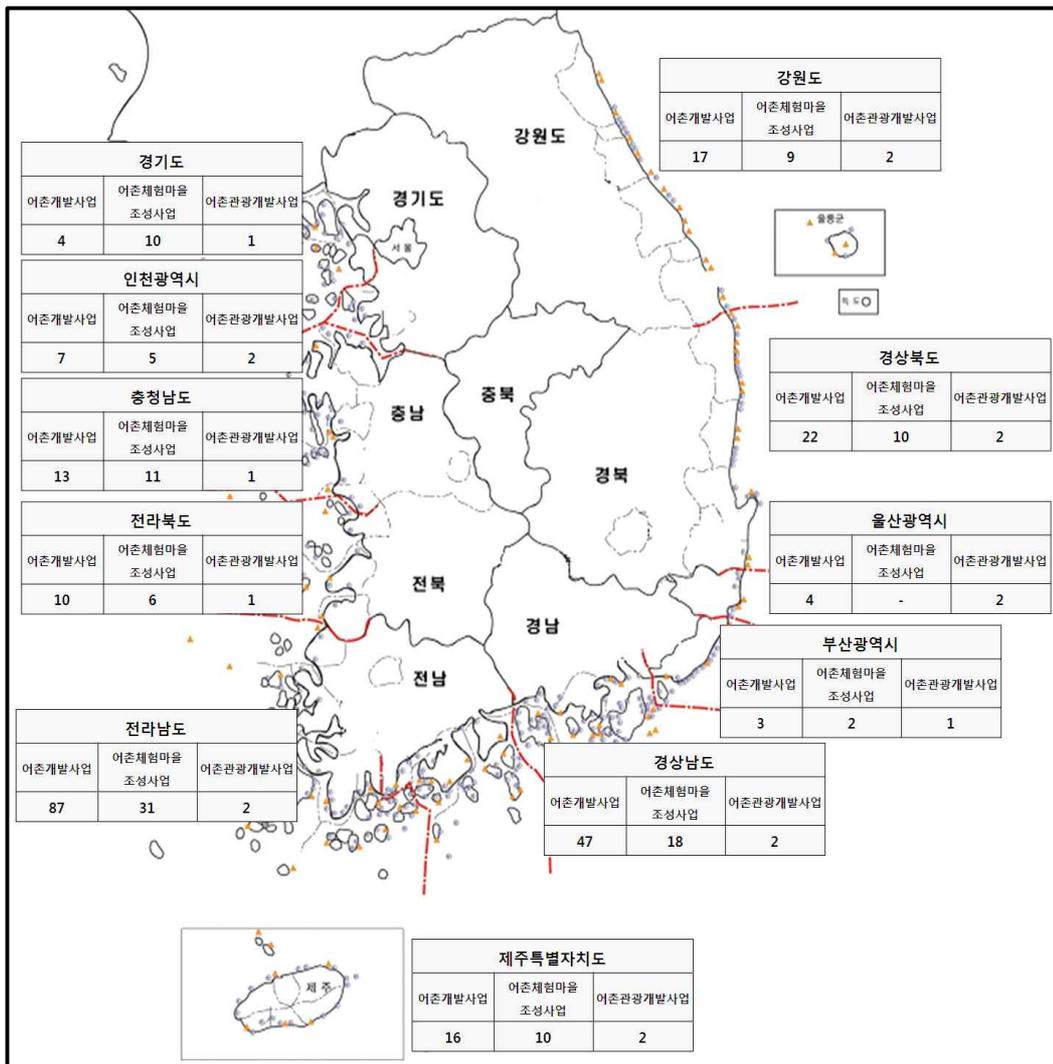
구분	어촌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	어촌관광개발사업
사업목적	수산업 소득기반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어촌체험 중심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민 휴식 공간 제공	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어업외 소득 증대
사업기간	'94~ '13	'01~ '13	'04~ '13
사업주체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사업규모	총 230개 권역	112개소	총 18개소
재원	균특회계	균특회계	균특회계
지원조건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	국고 50% 지방비 50%
총사업비 / '07까지 투자액	8,795억원 / 5,622억원	723억원 / 578억원	1,018억원 / 309억원

※ 어촌개발사업 230개소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어촌복합 생활공간조성 2개소(영광대신, 남해지족)는 미포함

- 사업내용은 어촌어항법제6조에 의거 어업인의 정주환경개선 및 어업외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어촌의 부족한 생산/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어촌관광기반시설 등을 지원함.

- 어촌개발사업**
  - 생산/소득기반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어촌체험마을사업**
  - 도시민들에게 어촌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체험 및 휴식·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 어촌관광개발사업**
  - 어촌의 고유한 특성, 자연경관, 어업자원 등을 기존 어항시설과 연계개발하여 어업의 소득을 증진코자하는 사업

### <어촌관련개발사업 현황>



## 나.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1) 어촌의 유형화 개발로 소득원 다변화(어촌개발사업)

#### ○ 현황

- 어촌의 소득증대 및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94년~’ 13년 까지 230개 권역(8,795억원)을 대상으로 추진
- 1단계 160개 권역(5,545억원)은 당초 ‘06년까지 완료예정 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08년 완료
- 2단계 70개 권역(3,250억원)은 ‘13년까지 완료 예정

#### <어촌개발사업 현황>

(단위 : 권역수(완공권역수))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어촌개발 사업	230 (160)	3 (2)	7 (6)	4 (3)	4 (2)	17 (13)	13 (10)	10 (7)	87 (57)	22 (15)	47 (32)	16 (13)

※ 160개 완공권역에는 ‘08완공예정 8개 권역 포함

#### ○ 문제점

- 그 동안 기반시설 위주의 지원 및 지역안배 분산투자로 사업효과 미흡
  - 정주·생산기반시설에 집중됨으로써, 지역특화 개발 미흡
  - 광범위한 지역을 1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내 사업비(35억)를 일률적으로 분산투자함에 따라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특화개발 곤란
-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미흡
  - 정형화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별 창의적인 어촌개발 미흡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자체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절차 사전 이행에 장기간 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 실천방안

- 지자체에서 권역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사업추진체계 개편
- 지역별 관광 부존자원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2단계 70개 권역중 61개 권역(중(40억이하)· 대(50억이하))에 대해 어촌교류형, 수산물유통판매형, 어촌관광레저형, 어촌문화 학습형 등 4개 유형으로 테마를 설정, 2013년까지 완료.
  - ⇒ 자연·경관자원, 생태·어업자원, 지역특산물·먹거리자원, 역사·문화자원 중 특성화가 가능한 유형(테마)을 설정, 고소득 어촌공간으로 조성
- 어촌지역 특성화 개발을 위해 사업비도 차등 지원방식으로 개편
  - ⇒ 일률적 지원방식은 지양하고, 지역 특성화에 따른 차등지원

〈권역분류 기준 및 사업비 규모〉

구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분류기준	어촌계 7개이상 어촌계원 420명이상	어촌계 5~6개 어촌계원 200~420명	어촌계 4개이하 어촌계원 200명이하
사업비 규모	50억이하	40억이하	30억이하
권역 규모	46개 권역	15개 권역	9개 권역

### 〈어촌개발사업(61개 권역) 유형화〉

자원성		접근성	도시근교	연안촌락	나후어촌
어촌교류형 (28)	전통어업/ 생태마을		삼척원덕	홍성홍성 외 9개 권역	부안위도 외 5개 권역
	어촌문화 마을		포항칠포 외 1개 권역	서산지곡 외 6개 권역	제주대정서부 외 1개 권역
수산물유통 판매형 (9)	향토특산물 마을		마산마산만 외 2개 권역	강원북부내수 면 외 3개 권역	완도신지 외 1개 권역
어촌관광 레저형 (20)	해양레저 마을		부산장안 외 7개 권역	거제서부 외 8개 권역	신안장산
	혼합형 관광마을		제주구좌서부	통영용남광도	-
어촌문화 학습형 (4)	테마교육 마을		화성서신 외 1개 권역	-	-
	무공해 마을		-	-	통영비진도 외 1개 권역
계			17개 권역	31개 권역	13개 권역

※ 70개소권역 중 소권역 9개 권역을 제외한 61개 권역을 유형화

- 1, 2단계 230개 권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역 특성화 개발이 미흡한 140여개 권역을 선정 3단계로 재정 비사업 추진
- ⇒ 1단계 160개 권역에 대해 선정 우선 배정하되, 어촌계의 사업 추진력 및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 2012년 : 3단계 어촌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시행(140개 권역 선정 및 우선 순위 결정) : 용역비 3억원
- 3단계 어촌개발사업 사업 시행(2014~)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09-' 13)	중장기( '14-' 23)
어촌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개 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에 따른 테마설정 추진</li> <li>- 테마설정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li> <li>- 권역별 사업비는 지역 특성화개발을 위해 차등 지원(50, 40억원)</li> <li>- 총소요예산 : 2,785억원</li> </ul> </li> <li>○ 3단계 어촌개발사업 방안 수립 (2012년, 3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어촌개발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시행권역에 대한 정비사업 (1, 2단계 230개 권역 중 140개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li> <li>- 소요예산 : 7,000억원</li> </ul> </li> </ul>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권역, 억원)

구분	총계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어촌개발사업	지원 권역수	210	70	26(14)	11(10)	12(12)	11(15)	10(20)	140
	사업비	9,785	2,785	258	396	453	472	1,206	7,000
	국비	6,850	1,950	181	277	317	331	844	4,900
	지방비	2,447	697	65	99	113	118	302	1,750
	자담	488	138	12	20	23	23	60	350
용역비		3	-	-	-	3	-		

※ 70개 지원권역은 유형화 61개 권역 및 정주환경기반 9개 권역임

※ ( )는 계속사업 권역임.

## 유형별 어촌개발 세부추진사항

### 어촌교류형

#### ○ 개발목표

- 바다 및 연안자원을 이용 도시/어촌 교류공간 거점 형성
- 연안생태, 어촌문화·역사, 산업에 대한 체험관광 기회 확대
- 어촌관광자원을 상호 연계시켜 종합프로그램화 하고, 이를 도시민에게 제공

#### ○ 사업내용

- 어업인들의 전통적인 어업과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교류공간으로 조성(전통어업/어촌생활 → 죽방렴, 독살, 개매기 등 전통어업, 풍어제 등 지역축제)
- 어촌의 지리적 특성과 환경을 활용,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체류형 특화마을 조성(특화마을 → 미술, 시, 작곡, 영화, 사진 등)



<도시·어촌교류>

○ 투자계획

(단위 : 권역, 억원)

구 분		단 기 계 획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어촌 교류형	권역수	28	7	5	5	6	5
	투자비	1,158	64	97	168	149	680

○ 기대효과

- 도시민에게 어촌 체험기회를 통해 건강한 휴식과 여가문화 조성
- 도시/어촌간 교류를 통해 도시민과 어업인과의 소통기회 확대

수산물 유통·판매형

○ 개발목표

-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이 연계된 생산클러스터를 관광 상품화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
-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선상에서 관련 산업과의 공동발전 추구

○ 사업내용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을 이용한 지역특산물 생산/판매지로 개발
  - 도시근교 → 특산물판매센타, 수산물직판장, 씨프런트 아케이드, 종합쇼핑센터
  - 연안촌락/낙후어촌 → 산지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냉동·냉장 및 건조장시설, 주차장, 진입로 등



〈일본의 수산물판매센터〉

○ 투자계획

(단위 : 권역, 억원)

구 분		단 기 계 획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산물 유통 판매형	권역수	9	5	1	2	1	(4)
	투자비	352	62	40	75	48	127

※ ( )는 계속사업 권역임

○ 기대효과

- 향토특산물을 어촌마을의 대표적 브랜드로 개발,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어촌에 벤처기업 유치로 어업인들 일자리 창출 및 지역민 소득증대 기여
- 방문객과 현지인, 방문객과 방문객 사이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가능
- 단순 생산판매를 2·3차 산업과 연계함에 따라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가능

## 어촌관광·레저형

### ○ 개발목표

- 어촌 친수공간 조성, 관광어촌어항 개발, 어촌 경관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관광상품 발굴을 통한 레저 관광어촌의 창조적 개발 추진
- 어촌의 지리적 특성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특화 개발

### ○ 사업내용

- 해상공간에서 바람, 파도, 해류의 흐름, 어류 등 역동적인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동호인 또는 젊은 층 등이 휴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마을(공간)을 조성(해양레저마을 → 해수욕장, 피서리나 등을 활용한 해양레크리에이션 단지, 스킨스쿠버 관련시설, 어촌낚시별장 조성 등)
- 어촌의 지리적 잠재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4계절 체류형 해양레저 공간으로 특성화하여 개발(혼합형관광마을 → 체류형 어촌관광유스호스텔, 어촌체험/관광펜션 단지, 해수온천탕, 야영장, 캠핑장 등)



<해양레저 시설>

## ○ 투자계획

(단위 : 권역, 억원)

구 분		단 기 계 획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어촌관광 레저형	권역수	20	13	2	2	1	2
	투자비	749	98	190	114	167	180

## ○ 기대효과

- 어업과 해양레저스포츠 간 공존으로 상호 상충관계 최소화(스킨스쿠버/마을어장 간 상충, 낚시와 가두리 양식장 상충 등)
- 어촌관광과 해양스포츠를 접목한 탐방객 유치로 지역개발 및 소득 증대 기여
- 젊은 층에게 해양레포츠를 통해 어촌이 휴식, 여가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 마련

## 어촌문화학습형

### ○ 개발목표

- 전통문화보전 및 가치전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어촌지역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어촌의 전통문화유산 등의 훼손이 심각
- 여가시간 및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가치관 변화로 도시민들의 건전한 관광 및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촌의 전통문화유산 학습 마을 육성

○ 사업내용

- 지리적으로 도시인접지역에 위치한 어촌마을의 경우 각종 생태자원 및 전통문화를 테마화하여 도시민들이 학습(관람)할 수 있는 기반 마련(테마교육마을 → 수족관, 해양생물 자연사박물관, 수산과학전시관, 어촌문화 박물관, 해군시설 견학(함정 승선체험 등)
- 낙도촌락형 어촌의 경우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휴양 및 건강음식문화마을로 조성(무공해 건강음식문화마을 → 환경친화적 생산기반시설을 조성 무공해 식품 생산지로 개발, 요양시설, 낙도 극기훈련장, 낙도 기숙학원 등)



<어촌민속전시관>

○ 투자계획

(단위 : 권역, 억원)

구 분		단 기 계 획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어촌문화 학습형	권역수	4	-	1	(1)	1	2
	투자비	180	-	5	20	19	136

※ ( )는 계속사업 권역임

##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도시민들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동질감 고취
- 도시민에게 일상을 탈피, 어촌의 전통문화를 상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어촌(섬)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건강장수 식품 공급 가능
- 지리적, 자연환경적 특성을 이용한 학습장소, 요양시설로서 역할

## 2) 소득과 연계한 어촌관광 활성화(어촌관광개발사업)

### ○ 현황

- 국민들의 생활패턴 변화로 어촌은 그동안 생산적 공간에서 도시민들의 가족단위 휴식과 체험관광(레저활동) 공간으로 전환
- 이에 따라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체험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코자 어촌관광개발사업 추진.
- 어촌체험마을은 총 112개소 중 '07년까지 87개소 지원
- 어촌관광개발은 총 18개소로 '07년까지 10개소 지원

### ○ 문제점

-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종합안내소, 안내판,소공원, 진입로 등 관광기반시설에 소규모로 집중되면서 사업효과 극대화가 곤란하고,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시연(試演), 운영기법, 홍보 등 소프트웨어 지원보다는 하드웨어 지원중심에 치중
- 어업인들의 관리운영능력 부족으로 효율적 관리운영 미흡

### ○ 실천방안

- 계획중인 어촌관광개발사업 32개소를 2013년까지 체계적으로 개발·완료함으로써 대중이 참여·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
-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 의식전환 유도
- 경관감상 위주의 정적개념에서 어업·생태·해양레포츠 체험 등 동적관광개념 도입을 통한 다양한 여가활동 창출로의 어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촌체험 및 어촌관광에 대한 사후 평가 시행 및 향후 어촌관광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영역 확대 방안 마련(2010년, 5억)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09-' 13)	중장기( '14-' 23)
어촌관광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체험마을형 17개소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1개소), 강원(1개소), 충남(4개소), 전북(2개소), 전남(2개소), 경북(3개소), 제주(4개소)를 지원</li> <li>- 개소당 사업규모: 5억원이상</li> <li>- 총소요예산 : 85억원</li> </ul> </li> <li>○ 어촌관광형 15개소 사업 완료 (2011년)후 신규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소당 사업규모: 50-60억원</li> <li>- 총소요예산 : 1,248억원</li> </ul> </li> <li>○ 단기계획완료 단계에서 사후 평가 시행(2010, 5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시군구 각 1개 마을 대상 총 76개 마을</li> <li>-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li> <li>- 총소요예산 : 4,560억원</li> </ul> </li> <li>※ 단사업 평가후 시행여부 결정</li> </ul>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별	총계	단 기 계 획							중장기 계획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어촌관광개발사업	사업수	108	32	9(12)	10(10)	5(4)	4(5)	4(5)	76
	사업비	5,893	1,333	186	263	291	292	301	4,560
	용역비	5	5	-	5	-	-	-	

※ ( )는 계속사업수입

### 3) 어촌 정주환경 개선(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 현황(문제점)

- 어업인력 감소와 더불어 노령화도 심각한 수준임
  -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60세 이상 노년층 비중은 13.5% 이나, 어촌지역의 경우 3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82.2%)은 국내 전체 가구(94.0%)에 비해 낮음
  - 상수도 공급율은 51.3%로 국내 전체 가구의 공급율 89.3%에 비해 매우 낮음

#### ○ 실천방안

- 고령화 공동화로 침체일로에 있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 낙후 및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복지 및 건강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지원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시범 사업 추진
  -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 (2010년, 3억원)
  - 정주환경개선사업 시범 사업 실시 (2012~2013)
  - 단기계 획완료 단계에서 사후평가 시행하여 계속여부 결정 (2013년, 3억원)

### <정주환경개선사업 지원 내용>

사업 부문	사 업 내 용
소프트 웨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거리, 마을의 자랑거리 주제화 발굴</li> <li>▷ 지역특산물 제품의 다양화, 차별화, 고품질화 - 포장/디자인 개선 등</li> <li>▷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 마을 이미지, 로고활용</li> <li>▷ 건강검진 - 보건소 협조 등 (마을 내 노인보호 지원체계 구축)</li> <li>▷ 마을간 건강프로그램 교류행사 개최</li> <li>▷ 노인회 활동 활성화 - 도·어촌 교류, 지역문화 전승 활동, 어린이 체험활동 강사로 활동</li> </ul>
하드 웨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마을 환경조성 - 산책로, 휴식공간</li> <li>▷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li> <li>▷ 주택의 신축 및 개량 등</li> <li>▷ 빈집철거 및 정비, 담장정비, 마을 진입로 정비, 색채사업 등</li> </ul>

※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및 추진방향은 용역사업을 시행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단기( '09-' 13)	중장기( '14-' 23)
정주환경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 3억원)</li> <li>○ 9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li> <li>- 총소요예산 : 270억원</li> </ul> </li> <li>○ 단기계획완료 단계에서 사후평가 시행(2013, 3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환경개선사업에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3개 어촌계 대상 사업추진</li> <li>-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li> <li>- 총소요예산 : 3,090억원</li> </ul> </li> <li>※ 단기사업 평가 후 시행 여부 결정</li> </ul>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별		총 계	단 기 계 획					중장기 계획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사업수	112	9	-	-	3	3	3	103
	사업비	3,366	276	-	3	90	90	93	3,090
정주환경 개선사업	사업수	112	9	-	-	3	3	3	103
	사업비	3,360	270	-	-	90	90	90	3,090
용역비		6	6	-	3	-	-	3	

※ ( )는 계속사업수임

#### 4) 어촌휴먼웨어 육성(어촌개발 전문인력 양성)

##### ○ 현황(문제점)

- 어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젊은 인력 부족으로 어촌지역 개발의지 실종
- 또한 어업인들의 경쟁적 조업 유발에 따른 자원남획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 발생
- 어촌관광 및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수준이 낮아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마을 운영에 한계가 있어 어촌관광 활성화 및 수산자원 관리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히 요구됨.

##### ○ 실천방안

- 어촌관광활성화 및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교육 등을 통해 육성함으로써 어촌을 기초생활권으로 새롭게 조성
- 지역개발사업인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의 운영효율성을 위해 해당 시·군에서 추천한 어촌계장, 개발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어촌개발사업 인력) 육성
- 어촌의 특성을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전문인력(어촌관광 전문인력)을 대상마을 지역주민 및 지역거주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육성
-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및 민간전문가 육성

## ○ 추진계획

### -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09-' 13)
어촌개발사업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개발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교육</li> <li>- 연 60명 교육(34시간)</li> <li>- 매년 지원 규모 : 50백만원</li> <li>- 총소요예산 : 250백만원</li> </ul>
어촌관광전문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li> <li>- 관광객 대상 해설, 지역어촌관광자료 개발 등 지역의 어촌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li> <li>- 연 120명 교육(80시간)</li> <li>- 소요예산 : 850백만원</li> <li>○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li> <li>- 1촌 1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li> <li>- 매년 16개 마을 지원</li> <li>- 소요예산 : 1,400백만원</li> <li>○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li> <li>-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li> <li>-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li> <li>- 소요예산 : 2,400백만원</li> <li>○ 총 소요예산 : 4,650백만원</li> </ul>
자율관리어업전문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컨설팅 지원</li> <li>- 신규참여·활동부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li> <li>- 각 수산사무소마다 민간전문가 1명이 매년 5~10개 공동체를 집중 관리</li> <li>- 소요예산 : 1,200백만원</li> <li>○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리더쉽 함양 및 민간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지원</li> <li>- 광역워크숍, 전문가워크숍 등 소요경비 지원</li> <li>- 소요예산 : 550백만원</li> </ul>
어촌지역개발리더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지역 지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li> <li>- 연 160명 교육(2박3일 3회, 1박2일 1회, 해외연수)</li> <li>- 매년 지원 규모 : 80백만원</li> <li>- 총소요예산 : 400백만원</li> </ul>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별	단 기 계 획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70.5	12.1	12.8	13.3	15.8	16.5
어촌개발사업 인력 육성	2.5	0.5	0.5	0.5	0.5	0.5
어촌관광전문 인력 육성	46.5	8.5	8.5	8.5	10.5	10.5
자율관리어업 전문인력육성	17.5	2.3	3.0	3.5	4.0	4.7
어촌지역개발 리더 육성	4.0	0.8	0.8	0.8	0.8	0.8

주) 전액 국비지원

## 주요 추진 사업

### 어촌개발사업 인력 육성

#### ○ 사업 목적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 계획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구축 및 어업의 소득증대에 기여
- 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관광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실효적인 사업추진 가능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250백만원 (매년 50백만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내용
  -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서 추천한 어촌계장, 개발위원장 등
  - 교육은 어촌개발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어촌개발정책, 해양수산일반, 관련법률, 서비스관리, 정보화 교육)등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1회 3박 4일에 걸쳐 34시간 집중교육 실시
  - 대상인원 : 300여명

#### ○ 기대 효과

- 어촌개발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
- 어촌개발사업의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

## 어촌관광전문인력 육성

### ○ 사업 목적

- 어촌지역 고유의 특성을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관광어촌마을 운영 자립능력 향상
- 외부전문가 컨설팅, 사무장지원 등을 통해 어촌체험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4,650백만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주요사업
  -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대상 : 600명) : 대상마을 지역주민 및 지역거주 은퇴자
  - 체험마을 컨설팅지원(대상 : 112개 마을) : 1촌 1전문가 매칭 컨설팅
  - 체험마을 사무장지원(대상 : 112개 마을) : 1촌 1사무장 지원

### ○ 기대효과

- 지역별 특화된 어촌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어촌관광객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어촌인력 일자리 창출.
- 전문적인 관광 마인드가 부족하여 어촌이 가지고 있는 미개발 관광자원을 외부 전문가의 도움(컨설팅)을 받아 상품화함에 따라 도시민들에게 체험공간 제공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도모

## 자율관리어업 전문인력 육성

### ○ 사업 목적

- 기존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는 어업인의 경쟁적 조업을 유발하여 자원남획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 발생
-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내실화를 통해 어촌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관리체계 구축 도모

###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1,750백만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주요사업
  - 자율관리공동체 컨설팅 지원(대상 : 30명) : 수산사무소별 매칭 컨설턴트 확보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및 민간전문가 육성(대상 : 1,300개 공동체)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리더쉽 함양 및 민간수산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 ○ 기대효과

-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어업인의 의식개혁 확산에 따른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및 어촌사회 발전 도모
- 법규준수 등 수동적 자원보호에서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관리와 불법어업 감소로 어가소득 증대 도모

## 어촌지역개발리더 육성

### ○ 사업 목적

- 어촌지역단위의 지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리더에게 사업기획 및 추진능력 등을 강화시켜 상향식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400백만원 (매년 80백만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주요내용
  - 교육대상자는 어촌계장, 어촌계사무장, 어촌계운영위원, 마을이장 대상( 대상인원 : 160여명)
  - 어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육성 교육과정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어촌지역개발리더 리더십육성과정은 총 4개 학습단위별 세부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리더 동기화 : 어촌환경 분석, 리더의 역할 등
    - .. 실천리더 양성 : 성공사례 분석, 어촌발전 이해
    - .. 혁신리더 양성 : 교육자의 어촌 분석, 미래 비전 구상
    - .. 워크숍 : 토론 및 어촌개발 비전 발표

### ○ 기대 효과

- 지역주민 스스로 정책 대안을 기획하고 정부정책에 참여하여 어촌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와 어업인간의 갈등을 해소

## 다. 어촌 투자 계획

- 어촌의 투자규모는 어선 감척 및 FTA협상과 같은 대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해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감안,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원동력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 따라서 지금까지 투자되고 있는 어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 확대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을 통하여 품격있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이 필요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단 기 계 획						증장기		
		소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획		
사업비		19,122	4,472	456	680	847	873	1,616	14,650	
어 촌 부 문	어촌 개발 사업	계	9,788	2,788	258	396	453	475	1,206	7,000
		사업수	206	66	14(12)	10(14)	12(20)	9(18)	9(20)	140
		사업비	9,785	2,785	258	396	453	472	1,206	7,000
		용역비	3	3	-	-	-	3	-	
	어촌 관광 개발 사업	계	5,898	1,338	186	268	291	292	301	4,560
		사업수	108	32	10(8)	9(10)	5(4)	4(5)	4(5)	76
		사업비	5,893	1,333	186	263	291	292	301	4,560
		용역비	5	5	-	5	-	-	-	
	어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	계	3,366	276	-	3	90	90	93	3,090
		사업수	112	9	-	-	3	3	3	103
		사업비	3,360	270	-	-	90	90	90	3,090
		용역비	6	6	-	3	-	-	3	
	어촌개발 / 자율관리 전문인력 육성사업	계	70	70	12	13	13	16	16	-
어촌개발 사업비		2.5	2.5	0.5	0.5	0.5	0.5	0.5	-	
어촌관광 사업비		46.5	46.5	8.5	8.5	8.5	10.5	10.5	-	
자율관리 사업비		17.5	17.5	2.3	3.0	3.5	4.0	4.7	-	
어촌리 사업비		4.0	0.8	0.8	0.8	0.8	0.8	0.8	-	

※ 상기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포함 금액이며, ( )는 계속사업수임

### 3.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 가. 현황

-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이익 및 해외 진출 원양어선의 어장 확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해외지원사업을 추진
  - 국토해양부 해외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하이퐁 신항과 아프리카 앙골라에 어업항구개발 협력지원사업을 추진 중
  - 원양어선의 해역별 조업 동향을 보면 태평양 226척, 대서양 129척, 인도양 32척이 조업 중에 있음.
- 해외개발 협력지원사업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에 대한 무상지원, 수산기반시설인 외곽시설, 접안시설, 배후교통시설 등에 대한 유상지원사업, 기술개발공유 및 인적교류활성화 등이 이에 속함.
- 지원대상시설은 외곽시설, 접안시설, 배후교통시설, 재해방지시설, 침식방지시설, 복합어항시설, 관광어항시설 등임.
- 사업지원방식은 무상지원과 유상지원(EDCF)사업으로 구별됨.
  - 무상지원사업 : KOICA
    - 개발도상국의 전국단위-권역별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개별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지원
  - 유상차관사업 : EDCF
    - 개발도상국의 어항개발을 위해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EDCF차관을 제공하여 시설확충에 기여
    - 방파제, 항로준설, 접안시설 등에 대한 EDCF 차관사업

## 나. 개발도상국 어항개발지원

### □ 사업 목적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
-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 구축

### □ 사업 내용

- 2009년 해외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실시
  - 해외 어항개발 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발대상지 조사, 해외 협력사업 추진체계 분석 등
- 2009년 해외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진사업단 구성·운영
  -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부서(국제기구과, 원양산업과 등) 사업단 구성
- 2010년 협력지원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 2011년 지원대상국과의 MOU 추진
- 2012년부터 개도국 어항개발 사업착수 및 기술지원

### □ 기대효과

- 개발도상국의 어항개발지원을 통한 상생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 어항개발 계획, 타당성조사, 설계, 건설, 운영 등 전 단계에서 지원함으로써 상호신뢰 구축
- 어항시설은 경제성장기반의 인프라 시설로서 개발도상국의 협력의지가 높으므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제고
-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개발사업 참여 추진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명	단기('09-' 13)	중장기('14-' 23)
개도국 어항개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협력사업 타당성 조사</li> <li>○ 사업지원 대상국 조사 및 선정</li> <li>○ 2개소 어항개발 추진</li> <li>- 항당 공사비 350억원 (설계, 감리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소 준공</li> <li>○ 4개소 신규 추진</li> </ul>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별		총사업비	단 기 계 획						중장기 계획
			소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개도국 어항개발 지원사업	사업수	6	(2)	-	-	-	2	(2)	4(2)
	사업비	2,100	323	3	10	10	100	200	1,777

주) ( )는 계속사업수임

〈KOICA 협력사업과 EDCF 차관사업의 선정절차 비교표〉

구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사업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조사사업, 연수생 초청 사업, 재난구호사업 등 무상 원조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 SOC, 에너지, 환경, 교육, 보건위생 사업 등에 대해 유상원조 (차관) 형태로 추진</li> </ul>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지원희망국) 정부 중점 추진사업</li> <li>○ 기술력이 우위에 있고, 국내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li> <li>○ EDCF 차관사업 등 후속사업 연계가능성이 높은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효과가 큰 지역·국가·분야를 집중 지원</li> <li>○ SOC시설은 구축성 원조지원이 가능한 비수익성 사업을 선별하여 적극지원</li> </ul> <p>→ 장래수익성사업에 국내기업 진출 여건 조성</p>								
선정 절차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절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비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발굴</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선정 신청</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확정</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협력사업 추진</div>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개발도상국 ↔ 개별부처</p> <p>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KOICA (외교통상부)</p> <p>KOICA 사업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p> <p>개별부처</p> </td> </tr> </table>	절차	비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발굴</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선정 신청</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확정</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협력사업 추진</div>	<p>개발도상국 ↔ 개별부처</p> <p>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KOICA (외교통상부)</p> <p>KOICA 사업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p> <p>개별부처</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절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비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발굴</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선정 신청</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확정</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차관사업 추진</div>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개발도상국 ↔ 개별부처</p> <p>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p> <p>기금운용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p> <p>개발도상국 ↔ 수출입은행</p> </td> </tr> </table>	절차	비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발굴</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선정 신청</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확정</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차관사업 추진</div>	<p>개발도상국 ↔ 개별부처</p> <p>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p> <p>기금운용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p> <p>개발도상국 ↔ 수출입은행</p>
절차	비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발굴</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선정 신청</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확정</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협력사업 추진</div>	<p>개발도상국 ↔ 개별부처</p> <p>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KOICA (외교통상부)</p> <p>KOICA 사업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p> <p>개별부처</p>									
절차	비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발굴</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선정 신청</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확정</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차관사업 추진</div>	<p>개발도상국 ↔ 개별부처</p> <p>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p> <p>기금운용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p> <p>개발도상국 ↔ 수출입은행</p>									

## V. 경제적 효과분석

### 1. 투자계획

□ 어촌·어항개발 사업 투자비는 단기 20,175억원, 중장기 68,050억원으로 총 투자금액은 88,225억원임

○ 어항개발부문은 단기 15,380억원, 중장기 51,623억원 투자

○ 어촌개발부문은 단기 4,472억원, 중장기 14,650억원 투자

○ 국제지원부문은 단기 323억원, 중장기 1,777억원 투자

(단위 : 억원)

구분	총계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14~' 23	
계	88,225	20,175	3,148	3,466	3,849	4,313	5,399	68,050	
어항 부문	소계	67,003	15,380	2,689	2,776	2,992	3,340	3,583	51,623
	어항 기본사업	29,356	7,377	1,790	1,500	1,382	1,246	1,459	21,979
	어항 정비사업	20,054	5,019	546	796	1,111	1,409	1,157	15,035
	어항환경 개선사업	17,593	2,984	353	480	499	685	967	14,609
어촌 부문	소계	19,122	4,472	456	680	847	873	1,616	14,650
	어촌 개발사업	9,788	2,788	258	396	453	475	1,206	7,000
	어촌관광 개발사업	5,898	1,338	186	268	291	292	301	4,560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3,366	276	-	3	90	90	93	3,090
	어촌인력 육성사업	70	70	12	13	13	16	16	-
국제 부문	소계	2,100	323	3	10	10	100	200	1,777
	개도국어항 개발 지원사업	2,100	323	3	10	10	100	200	1,777

※ 상기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포함 금액

## 2. 경제적 효과 분석

### □ 어가인구 및 어가소득 전망

#### ○ 어가인구

- 211,610명( '06년) → 160,061명(' 13년) → 106,119명(' 23년)

#### ○ 어가소득

- 30백만원( '06년) → 42백만원(' 13년) → 65백만원(' 23년)

### □ 생산유발효과

○ 단기 5년 동안 5조 6,000억원, 중장기 18조 7,500억원의  
과급효과 발생하여 투자대비 2.8배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 간접생산유발계수는 단기 0.97, 중장기 0.99로 어촌어항개발  
사업에 10천원을 투자할 경우 평균 9,800원의 생산 유발

### □ 경제유발효과

○ 2006년 GDP(한국은행 고시, 856조 1,919억원) 대비 단기  
(2013년) 0.7%, 중장기(2023년) 2.2%의 경제효과 발생

구 분	현재 (1966~2008)	단기계획 (2009~2013)	중장기계획 (2014~2023)
투자예산	5조 1,598억원	2조 175억원	6조 8,050억원
생산효과	14조 6,500억원	5조 6,000억원	18조 7,500억원
경제효과	GDP의 1.7%	GDP의 0.7%	GDP의 2.2%
어업소득	3,000만원	4,151만원	6,502만원

주) 생산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포함  
경제효과는 기준 GDP(국내총생산)는 한국은행 고시(2006년) 결과임